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변경 〉

■ 한준호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200461)

2024.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전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안 제13조제2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준호의원

나. 찬 성 자 : 169인

나. 발 의 일 : 2024. 6. 13.

다. 회 부 일 : 2024. 6.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회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Ⅲ. 검토의견

1. 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안 제13조제2항)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4인 이상의 위원이 출석하였을 때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적위원이 아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¹⁾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은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제2항²⁾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회의) ① (생 략)	제13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u>재적위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검토 의견

-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³⁾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같은 법 제5조제2항⁴⁾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되 1인은 여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고 2인은 야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함.
- 이러한 임명구조로 인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 지명 2인에 여당 교섭단체 추천 1인과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음.
- 다만 최근 6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이외 다른 위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해임 등 주요 안건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되고 있으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2인의 과반수의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②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 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

찬성으로 의결하고 있는 것임.

- 2023년 8월 25일 이동관 위원장 임명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 위원 체제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의결하고 있으며, 2인 위원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성근 이사를 임명(8월 28일)하였고, 김기중 이사를 해임(9월 18일)하였음.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 3항에 따라 부위원장을 2인의 위원 중 호선하여 이상인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음.

<6기 방통위 상임위원 현황(2024년 6월 기준)>

성명	지명(추천) 주체	임기	비고
이동관 (前)위원장	대통령	2023.8.25. ~ 2023.12.1.	2023년 12월 1일 의원면직
이상인 부위원장	대통령	2023.5.4. ~ 2026.5.3.	위원장 대행
김홍일 위원장	대통령	2023.12.29. ~ 2026.8.24.	2023년 12월 29일 임명

- 이에 따라,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각각 재적위원 4인 이상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주요 안건의 심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발의된 것으로, 현행법이 상임위원을 5인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지명 2인, 여야 교섭단체 각각 1명, 2명을 추천하여 구성하도록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제21대에 발의되었던 조승래의원안(의안번호 2123599)에 대해서, 의사정족수 도입 시 회의 개のが 제한되므로 활발한 정책 논의가 제약되고 이에 따라 국민 권익과 관련된 신속한 현안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며, 법상 기한이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조승래의원안(의안번호 2123599)은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려는 내용임.

- 참고로, 정부 위원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사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규정을 두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의사정족수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은 의사정족수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54조 및 제73조⁵⁾에 따라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⁶⁾에 따라 재적의원

5)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주요 위원회 등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기관명	법적 근거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방송통신위원회(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10(회의)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국회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대한민국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6)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관명	법적 근거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감사원	「감사원법」 제11조(의장 및 의결) ② 감사위원회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 찬성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회의 등)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종합해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 주요 안건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의결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려는 내용에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226